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30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김원이 · 이훈기
남인순 · 이수진 · 조계원
한준호 · 정진욱 · 박지원
박용갑 · 강경숙 · 정일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,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,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, 신고 의무, 축소·은폐 금지,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. 학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하고 있음.

그런데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및 캐나다의 교육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접근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 신설).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) ① 피해교원은 제20조,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경우 법원에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청구 받은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“잠정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이 경우 각 호의 조치는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
1. 피해교원에 대한 침해행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
2. 피해교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, 근무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3. 피해교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 및 학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-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피해교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잠정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잠정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6조의2(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) ① 피해교원은 제20조,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경우 법원에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청구받은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또는 보호자등에게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“잠정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</u> <u>이 경우 각 호의 조치는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</u> <u>1. 피해교원에 대한 침해행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</u> <u>2. 피해교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, 근무지 등</u>

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
3. 피해교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 및 학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피해교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잠정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⑤ 잠정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